

문서번호 2014-0805

수 신 서울특별시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 (전화 : 02-3999-103 팩스 : 02-3999-730)

발 신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담당 : 박성은 간사 02-723-5302 sese@pspd.org)

제 목 안종훈 교사의 신분노출 경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 재발대책마련 요구서

날 짜 2014. 8. 28. (총 2 쪽)

공익제보자 안종훈 교사의 신분노출 경위조사와 처벌 재발대책마련을 요구합니다.

.....

1. 안녕하십니까?
2. 사립학교의 비리의혹을 감독기관인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던 안종훈 교사가 사립학교재단에 의해 최근에 파면되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보를 받고 실시된 특별감사 중 서울시교육청 감사팀의 어이없는 불찰로 인해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었고, 이것이 부당한 불이익 조치의 계기가 되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신광식)는 공익제보자 안종훈 교사의 신분노출 경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 재발대책마련을 요구합니다.
3. 지난 2002년 4월, 서울 성북구 소재의 동구마케팅고 안종훈 교사는 학교가 비리로 실행을 선고받은 행정실장을 퇴직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하게 하고 그에 따라 인건비를 부담하게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독기관인 서울시교육청에 알렸고, 이를 계기로 서울시교육청 감사반이 2012년 9월 10일부터 9월 24일간의 기간 중 11일 간 실시했던 특별감사에서 안 교사의 제보내용을 포함하여 17건의 비리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후 해당학교는 집요하게 내부 제보자를 색출했고, 지난 8월 18일에 안 교사를 파면조치 했습니다. 그런데 공익제보자인 안 교사의 신분이 노출된 계기가 서울시교육청 감사팀이 감사 자료를 불성실하게 관리해 학교 PC에 남겨두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감사 후, 학교 측은 학교 메신저를 통해 제보자를 공개하며, 본교 PC에 남겨진 특별감사계획안에 민원인으로 안종훈 교사가 적시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학교의 제보자 색출 시도에 신변위험을 느낀 안 교사가 감사팀에게 신변보호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팀은 자신의 관여 사안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하였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4.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부당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현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반 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 감사의 기준이 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 10조는 “감사담당자들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로 감사기관의 보완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함으로써 공익제보를 활성화 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 자정 기능을 확대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더욱이 조직의 비리를 관할 감독기관에 제보한 안 교사의 행위는 명백히 공익제보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제보자 보호차원에서라도, 비밀유지 의무는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감사기관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위법한 행위일 뿐만 부당한 것입니다.

5. 이에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공익제보자의 신원이 공개되게 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실제 감사팀의 불찰에 의한 것이라면, 담당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합니다. 또한 안 교사의 신변보호 요청에도 불구하고 감사팀이 이를 거부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신변노출과 불이익 조치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익제보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감사기관의 이러한 위법행위는 법률과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을 더욱 조장하고, 공익제보의 기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

